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98
----------	------

2021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9일, 상정·보류)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재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주용태)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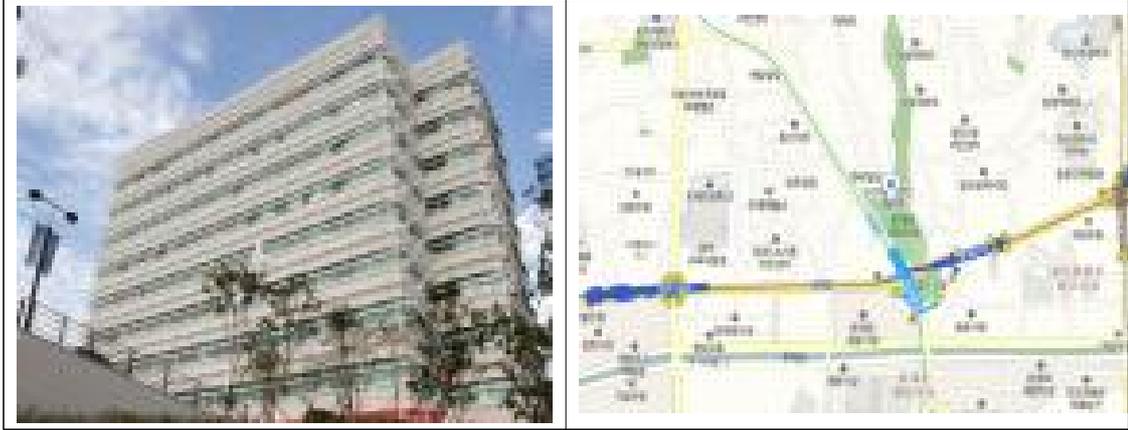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무 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필 요 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 필요
-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소요예산 : 330억원

(2)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규 모 : 대지 3,191㎡, 건물 5,937㎡ (9층 건물)
- 전경 및 위치도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 개요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8년 12월 서울시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대비 18%(37억 6천7백만원) 증가한 247억 4천2백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될 예정임.
-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시설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재단은 DDP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외에도 서울디자인 지원센터의 운영과 디자인정책 연구사업,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국·내외 교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문화 확산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 출연 규모의 적정성

-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에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330억원 규모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류한 바 있으며, 11월 현재 출연금 규모는 당초 제출했던 금액보다 82억 5천 8백만원이 줄어든 247억 4천2백만원으로 조정되었음.

이는 전년 대비 18%인 37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패션봉제사업 이관(경제진흥본부) 이전인 2020년도 출연액의 69% 수준이기거나 패션봉제출연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29억 8천8백만원(13.7%) 증액되었음.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세입예산액	출연금	비고
2020년	60,119,713	35,881,827	21,754,000(패션봉제제외)
2021년	51,344,694	20,975,489	
2022년(안)	48,718,045	24,742,258	9월 심사 당시 330억원

*패션봉제 출연금은 '20년도 사업종료로 '21년도부터는 편성되지 않았음.
('20년도 패션봉제 출연금 125억 8천6백만원)

- 「2022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이하 예산편성 기준)은 예산편성 시 건축재정 기조¹⁾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DDP 자체수입 손실분을 예비비(내부 유보금)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년 대비 출연금 증액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임.

1) 「2022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중 '건축재정 기조 반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익년도 회계결산 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책임경영 강화
- 법정 의무경비 제외한 재량지출과 전례답습·관행적 사업 및 부진사업 등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

라. 2022년 주요 현안

1) 잉여금의 시설위탁비 지출

- 서울디자인재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DDP 자체 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비비 전액을 시설위탁비로 집행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연도	편성액	지출액	잔액	비고
2020	2,369,532	2,369,532	-	*예비비 과목(세항-목-사업명)
2021	2,585,586	2,585,586	-	시설위탁비-지급수수료-DDP시설관리용역

- 재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DDP 운영수입이 급감할 것을 대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시켜 세출을 줄였고, 그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였음.

예산편성기준에서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유보금으로 들 수 있는 바, 재단은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매년 80억원 이상 지출되는 시설위탁비 지급수수료의 부족분을 충당해 왔음.

- 예산편성기준은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감축된 예산을 재차 감축하고, 사업의 취소 또는 축소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재단 기본시설인 DDP의

시설위탁비로 매년 지출하는 것은 재정건전성²⁾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2) DDP 일반관리비 출연금 최초 편성

- DDP는 개관 이래, 자체 수입으로 기본운영비를 100% 충당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수입이 감소하여 최근 2개년 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음.

재단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DDP의 기본운영비 자체 충당비율을 70% 수준으로 낮추고, DDP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비를 개관 이래 처음 출연금으로 편성함.

이는 재단이 처한 여건상 피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나 경직성 경비인 일반관리비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질을 띠므로 향후 불필요한 증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개년 간 DDP 일반관리비 편성>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3,551,965(41)	3,210,697(36)	3,256,116(39)	2,508,698(34)	2,993,027(40)

* ()는 예산편성 인원

* DDP 일반관리비는 DDP운영본부 내 ①인건비, ②운영경비, ③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매년 인원 현황에 따라 변동됨.

2) 2022년 예산편성의 원칙(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1. 재정건전성 강화 2. 독립채산의 원칙 3. 발생주의 원칙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5. 예산총계주의 원칙 6. 잉여금의 처리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3) 재단의 정체성 확보

- 재단은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 중 하나로 세우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2021년 세출예산(467억 9백만원, '21.8. 현재 기준) 대비 11%에 해당하는 51억 2천 만원에 지나지 않아 패션봉제사업 종료 후 재단의 정체성은 콘텐츠가 아니라 DDP 공간운영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임.

재단은 현재 '디자인비엔날레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 과거 서울패션위크와 같은 재단의 대표 브랜드 사업을 피하고 있는 바, DDP를 활용한 대표 콘텐츠를 육성해 서울의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임.

< 2022년도 서울디자인재단 지출예산(안) >

부 문	정 책	단 위	세부사업	2022년(안)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8,718,045	50,659,694	△2,101,649	△4.1%
디자인사업				42,002,258	38,833,089	3,169,169	8.2%
디자인트렌드발신				7,100,000	3,700,000	3,400,000	91.9%
자체기획전시				4,900,000	2,300,000	2,600,000	113.0%
디자인뮤지엄기획전시				900,000	700,000	200,000	28.6%
소장품상설전시운영				400,000	-	400,000	신규
디자인상설전시운영				300,000	-	300,000	신규
서울라이트운영				3,200,000	1,500,000	1,700,000	113.3%
청년창작자양성사업				100,000	100,000	-	-
디자인라키비움구축				300,000	-	300,000	신규
디자인라이브러리구축				100,000	-	100,000	신규
디자인협력프로그램운영				200,000	-	200,000	신규
디자인지식확산				1,900,000	1,400,000	500,000	35.7%
DDP디자인어워드				1,000,000	700,000	300,000	42.9%
미래세대디자인교육				700,000	700,000	-	-
디자인협력프로그램운영				200,000	-	200,000	신규
디자인문화확산				14,360,270	15,367,902	△1,007,632	△6.6%
DDP명소화				1,450,000	1,250,000	200,000	16.0%
DDP시민참여문화행사				1,000,000	950,000	50,000	5.3%
투어프로그램 개발				150,000	-	150,000	신규
DDP공간활성화서비스				300,000	300,000	-	-
디자인가치확산				650,000	2,000,000	△1,350,000	△67.5%
유니버설디자인플랫폼운영				200,000	900,000	△700,000	△77.8%
디자인컨설턴트				250,000	250,000	-	-
디자인사업연구개발				200,000	200,000	-	-
서울돌봄디자인사업				-	350,000	△350,000	△100.0%
감염예방디자인사업				-	300,000	△300,000	△100.0%
디자인지원인프라강화				12,260,270	12,117,902	142,368	1.2%
DDP시설관리				2,860,270	2,820,772	39,498	1.4%
DDP시설위탁운영				9,200,000	9,147,130	52,870	0.6%
안전관리사업				200,000	150,000	50,000	33.3%
디자인산업경쟁력강화				5,300,000	5,425,000	△125,000	△2.3%
국내외디자인판로개척지원				3,600,000	3,700,000	△100,000	△2.7%
DDP디자인페어개최				1,200,000	850,000	350,000	41.2%
서울디자인위크개최				1,900,000	1,300,000	600,000	46.2%
DDP디자인스토어운영				500,000	600,000	△100,000	△16.7%
서울디자인브랜드전				-	500,000	△500,000	△100.0%

부 문	정 책	단 위	세부사업	2022년(안)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우수디자인상품마케팅활성화	-	450,000	△450,000	△100.0%
			청년디자인스타트업지원강화	1,700,000	1,725,000	△25,000	△1.4%
			서울디자인창업센터	1,200,000	1,225,000	△25,000	△2.0%
			서울디자인브랜드개발	500,000	500,000	-	-
			혁신경영시스템	2,431,000	2,119,400	311,600	14.7%
			지속경영인프라구축	2,431,000	2,119,400	311,600	14.7%
			경영시스템효율화사업	300,000	300,000	-	-
			정보인프라운영	1,090,000	878,400	211,600	24.1%
			스마트경영시스템구축	100,000	-	100,000	신규
			통합홍보마케팅	941,000	941,000	-	-
			일반관리비	12,810,988	12,220,787	590,201	4.8%
			디자인사업일반관리비	9,817,961	9,712,089	105,872	1.1%
			인건비	6,023,011	5,986,808	36,203	0.6%
			운영경비	3,084,608	3,007,202	77,406	2.6%
			성과급	710,342	718,079	△7,737	△1.1%
			DDP일반관리비	2,993,027	2,508,698	484,329	19.3%
			인건비	2,188,304	1,766,670	421,634	23.9%
			운영경비	551,337	529,799	21,538	4.1%
			성과급	253,386	212,229	41,157	19.4%
			위탁사업	6,515,787	9,241,019	△2,885,232	△31.2%
			DDP시설개보수및콘텐츠공간리뉴얼	1,250,000	2,501,000	△1,251,000	△50.0%
			DDP화상스튜디오조성및운영	-	1,798,000	△1,798,000	△100.0%
			서울새활용플라자	4,591,880	4,268,112	323,360	3.8%
			청년디자이너양성사업(협의중)	673,907	673,907	163,768	-
			예비비	200,000	2,585,586	△2,385,586	△92.3%

담당 조사관	연락처
심형준	02-2180-811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98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소요예산 : 33,000,000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2) 규모 : 대지 3,191 m^2 , 건물 5,937 m^2 (9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서점덕(☎ 2133-2703)